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2003년 9월 ~ 12월)

자료 모음 2. 법안들

1)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2003. 8. 14)
 발의자 : 김덕규, 함승희, 천용택, 김옥두, 정균환, 박상천
2)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 및 수정안 제출통지(2003. 11. 10)
 발의자 :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함승희, 열린우리당 김덕규 공동발의
3)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사안 대비표(2003. 11. 15 이후)

2003년 8월 14일 민주당(당시) 의원들은 2001년 제출된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2003년 11월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3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수정안을 철회하고, 또다른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어 이 법안은 11월 14일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제2소위는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또다른 심사안을 제출했다.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국정원 내에 대테러활동을 기획, 조정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만은 공통적으로 변함이 없으며, 또한 모두 국정원과의 협의 하에 만들어진 법안들이다.

테러방지법안에대한수정안

동의년월일 : 2003. 8. 14
동 의 자 : 김덕규·함승희·
천용택·김옥두·
정균환·박상천위원

수정이유

정부가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2001. 11. 28 이후 각종 테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법이 입법되는 등 입법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처벌조항과 형사소송상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오직 테러예방활동에 필요한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구축,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될 있는 각종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테러분자 등 테러의 주체에 대한 규제 등 국가대테러업무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대테러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골자

가. 안 제1조의 목적에서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을 삭제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 입법취지를 변경함(안 제1조).

나. 안 제2조의 테러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합의를 이루었고 우리나라가 체결·비준한 테러관련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행위로 테러의 정의를 한정하고(안 제2조제1호), 테러단체는 UN 등 국제사회에서 지목하는 단체 또는 이와 연계된 단체로, 테러자금은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자금으로 각각 정의함으로써 그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다. 처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 제3조를 삭제함.

라. 안 제4조의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상임위원회는 업무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동조의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함.

마. 대테러업무는 그 특성상 조직과 능력을 보호해야 하므로 대테러센터의 조직이 공개될 소지가 있는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함.

바. 안 제11조에서 사법경찰관이 테러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출국조치 등 강제처분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임의처분인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해소하고, 업무범위에 "테러자금 지원 여부"를 추가하여 실질적 예방정보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테러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조치는 물론 입국규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안 제15조(군병력의 지원)에서 지원된 군병력 등에게 제한적이지만 경찰관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여 테러사건 발생시 군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되 지원된 군병력은 순수하게 경비업무만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아. 안 제4장의 벌칙조항은 현행 실정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테러범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2001. 11 이 법 제출 이후 항공안전 및보안에관한법률(2002. 8),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2003. 4),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처벌법(2003. 4) 등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법률이 입법되었으므로 안 제17조(테러), 안 제18조(병원체를 이용한 테러), 안 제19조(테러단체의구성 등), 안 제20조(테러자금의 조달), 안 제21조(테러범죄의 미신고) 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형사관련 규정인 안 제23조(자격정지의 병과), 안 제24조(형의 면제)를 삭제함과 동시에 범죄인인도법과 상호주의의 예외인 안 제25조(필요적 수사 및 인도) 조항을 삭제함.

자. 안 제27조는 국가배상법 등 관계법률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함.

차.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중 테러자금 거래정보를 수사목적이 아닌 테러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안보목적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되도록 수정함.

카. 기타 법안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6조 분야별 테러사건 대책본부, 안 제7조 진압작전 및 인명구조 조직의 설치, 안 제8조 대테러대책협의회를 테러대책기구로 하여 조문을 통합 정리함(안 제5조).

테러방지법안에대한수정안

테러방지법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 대응체제와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내지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테러"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

나.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다. 외교관등국제적보호인물에대한범죄의예방및처벌에관한협약

라. 인질억류방지에관한국제협약

마.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바. 1971년9월23일몬트리올에서채택된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을보충하는국제민간항공에서사용되는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사.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억제협약

아. 대륙붕상에위치한고정된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정서

자.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2. “테러단체”라 함은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3.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4.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혐의자 규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및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 안전확보 및 테러위협에의 대응·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한다.

안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심의·의결”을 “심의”로 하며, 동조 제3항중 “그 위원”을 “위원”으로, 동항제1호중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6항을 제4항으로, 동항중 “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대책회의”로 한다.

안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대테러센터”로, 동항제6호중 “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대책회의에서 심의”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 직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조직 및 정원은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당해 파견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안 제6조·제7조 및 제8조를 제5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대테러대책기구의 설치) ①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②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③공항·항만 등 특정지역 내에서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대책기구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안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1조를 제8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외국인 출입국 규제 등) ①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그 소재지·국내 체류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규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안 제12조를 제9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상임위원회에"를 "대책회의 의장에게"로 한다.

안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안 제14조를 제11조로 하고, 제목중 "특수부대 및 구조대"를 "특수부대"로 하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 및 구조대"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로 한다.

안 제15조를 제12조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을 "대책회의 의장은"으로 하며,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 시설 등"을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16조를 제15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법경찰권)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은 제13조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안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삭제한다.

안 제22조를 제13조로 하고, "전화·서신"을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서신"으로 한다.

안 제26조를 제14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상금)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안 제27조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호 자목, 제3호,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우리나라가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및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을 비준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대테러센터의장"으로 한다.

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자금 또는 재산"을 "자금 또는 재산, 테러방지법 제2조제3호 테러자금"으로 한다.

③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반국가활동"을 "반국가활동 또는 테러"로 한다.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테러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테러방지법 제13조에 규정된 죄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 대응체제와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테러"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요인·각계 주요인사·외국요인과 주한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가.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
	나.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다. 외교관등국제적보호인물에대한범죄의예방및처벌에관한협약

원 안	수 정 안
나. 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라. 인질억류방지에관한국제협약
다. 항공기·선박·차량 등 교통수단의 납치·폭파	마.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라. 폭발물·총기류 그 밖의 무기에 의한 무차별한 인명살상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바. 1971년9월23일몬트리올에서채택된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을보충하는국제민간항공에서사용되는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마. 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살포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사.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억제협약
2. "테러단체"라 함은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아. 대륙붕상에위치한고정된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정서
3. "테러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가. 테러단체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과 그 자산에 관한 권리	2. "테러단체"라 함은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나. 테러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과 테러를 통하여 얻거나 얻기로 한 수익	3.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4.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국내외에서의 테러의 예방·방지, 테러의 진압, 테러사건현장에서의 인명구조·구급조치 등	4.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주민보호 등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혐의자 규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및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 안전확보 및 테러위협에의 대응·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테러의 예방·방지 및 테러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통합방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4조(국가대테러대책회의) ①대테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국가대테러대책회의) ①…… 심의…… …….
②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대테러정책의 수립방향 2.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 3. 각종 대테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평가 4. 그 밖에 테러의 예방·방지에 관한 정부의 시책	②…… 심의……. 1.~4.(원안 제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같음)
③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③……, 위원…….

1. 재정경제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가정보원장 3.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1. ……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3.(원안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④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책회의에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⑤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무조정실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책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삭 제>
⑥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대책회의…….
제5조(대테러센터) ①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4조(대테러센터) ①……국가정보원장소속하에 대테러센터…….

1. 테러징후의 탐지 및 경보 2. 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3.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 4.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5. 외국의 정보기관과의 테러관련 정보협력 6. 그 밖에 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1.~5. (원안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와 같음) 6. ····· 대책회의에서 심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③대테러센터의 조직은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②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 직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조직 및 정원은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당해 파견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대테러센터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당해 파견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원안 제5조제5항과 같음)
⑤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①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사건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조정·지휘하기 위하여 관계	제5조(대테러대책기구의 설치) ①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 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지휘·조정하기

기관에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위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②국외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와 외국과의 협력 등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둔다.	②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항·항만 등 특정지역 내에서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제7조(진압작전 및 인명구조조직의 설치) ①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등은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와 테러사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구급조치 등 주민보호를 위한 구조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대책기구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대테러대책협의회) ①지역 및 공항·항만별로 대테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와 공항 및 항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테러의 예방 및 테러에의 대응		
제9조(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 물질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원안 제9조와 같음)	
제10조(국가중요행사의 대테러대책) ①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당해 행사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대테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대테러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국가중요행사의 대테러대책) ①(원안 제10조제1항과 같음) ②…… ……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외국인의 출국조치)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과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테러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내체류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테러센터의 장 또는 경찰청장은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 출입국규제 등) ①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그 소재지·국내체류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규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상황전파) ①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그 징후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대테러센터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상황전파) ①(원안 제12조제1항과 같음) ②…… …… …… 대책회의 의장에게 …….	
제13조(대응조치) 테러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발생지역이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군부대장, 해양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은 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사태의 발생 등 테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대응조치) (원안 제13조와 같음)	

제14조(특수부대 및 구조대의 출동요청)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 및 구조대의 출동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특수부대의 출동요청) …………………………………………………………………………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
제15조(군병력등의 지원) ①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군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이하 "군병력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군병력 등의 지원) ①대책회의 의장은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
②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따라 군병력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병력등을 지원한 후 국회가 군병력등의 철수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원안 제15조제2항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군병력 등은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방지 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방지조치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6조(사법경찰권)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15조(사법경찰권)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은 제13조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4장 벌 칙	
제17조(테러) ①테러를 범한 자는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군형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률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다만, 테러가 다음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형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인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1.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36조	<삭 제>

(공무집행방해), 제141조제2항(공용물의 파괴),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제172조의2(가스·전기 등 방류), 제173조(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제193조(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제258조제1항(중상해), 제259조제1항(상해치사),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1조제1항(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제284조(특수협박),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및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내지 제369조(특수손괴)의 죄	
2.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내지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의 죄	
3. 항공법 제156조(항공상 위험발생 등의 죄)의 죄	
4.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1조(항공기운항저해죄)의 죄	
5. 철도법 제80조(신호기 등에 대한 벌칙), 제81조(직무집행방해에 대한 벌칙) 및 제85조(발포하거나 돌 등을 던진 자에 대한 벌칙)의 죄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벌칙)의 죄	
7. 원자력법 제115조(벌칙)의 죄	
8.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호(벌칙)의 죄	
9.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벌칙)의 죄	
②테러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삭 제>
③테러를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 제>
제18조(병원체를 이용한 테러) ①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병원체를 사용하여 테러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삭 제>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삭 제>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 제>
제19조(테러단체의 구성 등) ①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삭 제>
1.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테러단체에의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삭 제>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삭 제>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 제>
제20조(테러자금의 조달 등)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주선·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그 취득·처분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삭 제>
제21조(테러범죄의 미신고) ①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알고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테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교통·통신의 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②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2조(허위신고 등)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협박을 가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허위신고 등)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서신…… …… …… …… …… ……
제23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을 선고한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형의 면제) 테러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 테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게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삭 제>
제5장 보 칙	
제25조(필요적 수사 및 인도) 외국으로부터 테러범죄로 신병인도를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 수사기관에 인계하거나 신병요구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상금)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제14조(상금)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

	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제27조(테러피해의 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 인하여 신체 및 재산에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 제>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	제1조(시행일) ……. 다만, 제2조제1호자목 및 제3호,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우리나라가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및 테러자금조달억제를위한국제협약을 비준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제20조의규정에 의한 죄에 관한 형사사건인 때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대테러센터의 장"으로 한다. 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자금 또는

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0조"로 한다. ③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중 "48시간"을 각각 "48시간(제5조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7일간)"으로 한다.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테러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산"을 "자금 또는 재산, 테러방지법 제2조제3호 테러자금"으로 한다. ③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반국가활동"을 "반국가활동 또는 테러"로 한다.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테러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테러방지법 제13조에 규정된 죄

4.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규정된 죄	

테러방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 대응체제와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

   나.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다. 외교관등국제적보호인물에대한범죄의예방및처벌에관한협약

   라. 인질억류방지에관한국제협약

   마.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바. 1971년9월23일몬트리올에서채택된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을보충하는,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는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사.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억제협약

   아. 대륙붕상에위치한고정된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정서

   자.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2. "테러단체"라 함은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3.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4.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혐의자 규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대테러대책회의) ①대테러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대테러정책의 수립방향
2.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
3. 각종 대테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평가
4. 그 밖에 테러의 예방·방지에 관한 정부의 시책

③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가정보원장
3.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④대책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대테러센터) ①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대테러센터를 둔다.

1. 테러징후의 탐지 및 경보
2. 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3.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
4.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5. 외국의 정보기관과의 테러관련 정보협력
6. 그 밖에 대책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 직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조직 및 정원은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당해 파견 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대테러대책기구의 설치) ①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용한다.

②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③공항·항만 등 특정지역 내에서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

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대책기구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중요행사의 대테러대책) ①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당해 행사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대테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대테러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외국인 출입국규제 등) ①대테러 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그 소재지·국내 체류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

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규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상황전파) ①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그 징후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대테러센터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대책회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대응조치) 테러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발생지역이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군부대장, 해양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은 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사태의 발생 등 테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특수부대의 출동 요청)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의 출동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군병력 등의 지원) ①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군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이하 "군병력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따라 군병력 등을 지원하

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병력 등을 지원한 후 국회가 군병력 등의 철수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허위신고 등)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협박을 가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상금)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제15조(사법경찰권)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은 제13조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자목 및 제3호,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우리나라가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과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협약을 비준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대테러센터의장"으로 한다.

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자금 또는 재산"을 "자금 또는 재산, 테러방지법 제2조제3호 테러자금"으로 한다.

③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반국가활동"을 "반국가활동 또는 테러"로 한다.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테러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테러방지법 제13조에 규정된 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철회 및 수정안 제출통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3. 11. 10자로 다음과 같이 각각 철회 요구 또는 발의·제출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수정안 철회

- 2002. 2. 26 한나라당 정형근위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 2003. 8. 14 민주당 김덕규위원외 5인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2. 수정안 제출

- 한나라당 홍준표위원, 민주당 함승희위원, 열린우리당 김덕규위원이 공동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붙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홍준표위원외 2인 공동발의) 1부. 끝.

2003. 11. 10.

정 보 위 원 장

(☎788-2275 · 6)

테러방지법안에대한수정안

동의년월일 : 2003. 11. 10
동 의 자 : 홍준표 · 함승희
김덕규위원

수정이유

정부가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2001. 11. 28 이후 각종 테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법이 입법되는 등 입법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원안의 처벌조항과 형사소송상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북한 · 이슬람 등의 국내외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침해와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의 소지를 차단하여 오직 테러예방활동에 필요한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구축,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각종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 · 시설 · 장비의 보호, 국제테러분자 등 테러의 주체에 대한 규제 등 국가대테러업무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대테러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골자

가. 안 제1조의 목적에서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을 삭제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 입법취지를 변경함(안 제1조).

나. 안 제2조의 테러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합의를 이루었고 우리나라가 체결 · 비준한 테러관련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행위로 테러의 정의를 한정하고(안 제2조제1호), 테러단체는 UN 등 국제사회에서 지목하는 단체 또는 이와 연계된 단체로, 테러자금은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자금으로 각각 정의함으로써 그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함(안 제2조제2호 및 3조).

다. 처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 제3조를 삭제함.

라. 안 제4조의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상임위원회는 업무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동조의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함.

마. 대테러센터의 업무 중 대테러활동의 "기획 · 지도 및 조정"에서 "지도"를 삭제하여 권한남용의 여지를 없애고, 대테러업무는 그 특성상 조직과 능력을

보호해야 하므로 대테러센터의 조직이 공개될 소지가 있는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함.

바. 안 제11조에서 사법경찰관이 테러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출국조치 등 강제처분하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임의처분인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인권침해 소지를 해소하고, 업무범위에 "테러자금 지원 여부"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예방정보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테러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조치와 입국규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안 제15조(군병력등의 지원)에서 지원된 군병력 등에게 제한적이지만 경찰관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여 테러사건 발생시 군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되 지원된 군병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순수하게 경비업무만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아.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의 허위신고 등의 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폐지하여 동 센터 공무원의 권력남용 여지를 없앰.

자. 안 제4장의 벌칙조항은 현행 실정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테러범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2001. 11 이 법 제출 이후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2002. 8),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2003. 4),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처벌법(2003. 4) 등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법률이 입법되었으므로 안 제17조(테러), 안 제18조(병원체를 이용한 테러), 안 제19조(테러단체의구성 등), 안 제20조(테러자금의 조달), 안 제21조(테러범죄의 미신고) 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형사관련 규정인 안 제23조(자격정지의 병과), 안 제24조(형의 면제)를 삭제함과 동시에 범죄인인도법과 상호주의의 예외인 안 제25조(필요적 수사 및 인도)를 삭제함.

차. 안 제27조는 국가배상법 등 관계법률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함.

카.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중 테러자금 거래정보를 수사목적이 아닌 테러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안보목적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이 되도록 수정함.

타. 기타 법안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6조 분야별 테러사건 대책본부, 안 제7조 진압작전 및 인명구조 조직의 설치, 안 제8조 대테러대책협의회를 테러대책기구로 하여 조문을 통합 정리함(안 제5조).

테러방지법안에대한수정안

테러방지법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 대응체제와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내지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테러"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
   나.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다. 외교관등국제적보호인물에대한범죄의방지및처벌에관한협약
   라. 인질억류방지에관한국제협약
   마.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바. 1971년9월23일몬트리울에서채택된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을보충하는,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는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사.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아. 대륙붕상에소재한고정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자.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2. "테러단체"라 함은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3.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4.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혐의자 규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및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 안전확보 및 테러위협에의 대응·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한다.

안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그 위원"을 "위원"으로, 동항 제1호중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6항을 제4항으로, 동항중 "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대책회의"로 한다.

안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동제 제1항중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대테러센터"로, 동항제3호중 "기획·지도 및 조정"을 "기획 및 조정"으로, 동항제6호중 "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대책회의"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 직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조직 및 정원은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서는 미리 당해 파견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안 제6조·제7조 및 제8조를 제5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대테러대책기구의 설치) ①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②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③공항·항만 등 특정지역 내에서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대책기구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안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1조를 제8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외국인 출입국 규제 등) ①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그 소재지·국내 체류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규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안 제12조를 제9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상임위원회에"를 "대책회의 의장에게"로 한다.

안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안 제14조를 제11조로 하고, 제목중 "특수부대 및 구조대"를 "특수부대"로 하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 및 구조대"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로 한다.

안 제15조를 제12조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을 "대책회의 의장은"으로,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 시설 등"을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군병력 등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안 제16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를 삭제한다.

안 제22조를 제13조로 하고, "전화·서신"을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서신"으로 한다.

안 제26조를 제14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상금)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안 제27조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호 자목, 제3호,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우리나라가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및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악을 비준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대테러센터의 장"으로 한다.

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자금 또는 재산"을 "자금 또는 재산, 테러방지법 제2조제3호 테러자금"으로 한다.

③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반국가활동"을 "반국가활동 또는 테러"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2003.11.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대응체제와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요인·각계 주요인사·외국요인과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나. 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다. 항공기·선박·차량 등 교통수단의 납치·폭파 라. 폭발물·총기류 그 밖의 무기에 의한 무차별한 인명살상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마. 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살포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2. "테러단체"라 함은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3. "테러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테러단체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과 그 자산에 관한 권리 나. 테러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과 테러를 통하여 얻거나 얻기로 한 수익 4.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국내외에서의 테러의 예방·방지, 테러의 진압, 테러사건현장에서의 인명구조·구급조치 등 주민보호 등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불법납치를위한협약 나.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다. 외교관등국제적보호인물에대한범죄의예방및처벌에관한협약 라. 인질억류방지에관한국제협약 마.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바. 1971년9월23일몬트리올에서채택된민간항공의 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을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는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사.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억제협약 아. 대륙붕상에위치한고정된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정서 자.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2. "테러단체"라 함은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3.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제공, 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4.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혐의자 규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테러의 예방·방지 및 테러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통합방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4조(국가대테러대책회의) ①대테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국가대테러대책회의) ① (원안 제4조제1항과 같음)
②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대테러정책의 수립방향 2. 테러사건데 대한 대응대책 3. 각종 대테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평가 4. 그 밖에 테러의 예방·방지에 관한 정부의 시책	②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4. (원안 제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같음)
③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가정보원장 3.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③ ....., 위원.. ..... 1.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3. (원안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④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책회의에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제>
⑤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무조정실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책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삭제>
⑥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대책회의..... .....
제5조(대테러센터) ①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를 둔다. 1. 테러징후의 탐지 및 경보 2. 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3.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 4.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5. 외국의 정보기관과의 테러관련 정보협력	제4조(대테러센터) ①..... .... 국가정보원장소속하에 대테러센터..... ..... 1.·2. (원안 제5조제1호·제2호와 같음) 3. .....기획 및 조정 4.·5. (원안 제5조제4호·제5호와 같음)

6. 그 밖에 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6. .....대책회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대테러센터의 조직은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삭제>
④대테러센터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당해 파견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 직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조직 및 정원은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당해 파견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원안 제5조5항과 같음)
제6조(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①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사건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조정·지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 (대테러대책기구의 설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용한다.
②국외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와 외국과의 협력 등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둔다.	②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진입을 위한 특수부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항, 항만 등 특정지역 내에서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제7조(진압작전 및 인명구조조직의 설치) ①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등은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와 테러사건현장에서의 인명구조·구급조치 등 주민보호를 위한 구조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대책기구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특수부대의 운영,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대테러대책협의회) ①지역 및 공항·항만별로 대테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와 공항 및 항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장 테러의 예방 및 테러에의 대응	
제9조(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원안 제9조와 같음)
제10조(국가중요행사의 대테러대책)①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당해 행사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대테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중요행사의 대테러대책) ① (원안 제10조 제1항과 같음)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대테러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신설>	.....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외국인의 출국조치)대테러센터의 공무원(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과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테러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내체류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테러센터의 장 또는 경찰청장은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장관에게 출국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의 출입국규제 등) ①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그 소재지·국내 체류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규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상황전파)①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그 징후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대테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상황전파) ① (원안 제12조제1항과 같음)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대책회의 의장에게.....
제13조(대응조치) 테러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발생지역이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군부대장, 해양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은 현장을 통제·보존하는 후발사태의 발생 등 테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대응조치) (원안 제13조와 같음)

제14조(특수부대 및 구조대의 출동요청)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 및 구조대의 출동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특수부대의 출동요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 .....
제15조(군병력등의 지원) ①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군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이하 "군병력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따라 군병력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병력등을 지원할 후 국회가 군병력등의 철수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군병력등은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방지 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방지조치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처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군병력 등의 지원) ①대책회의 의장은.....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 .... ② (원안 제15조제2항와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군병력등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삭제>
제16조(사법경찰권)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 및 군사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삭제>
제4장 벌칙	
제17조(테러) ①테러를 범한 자는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군형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률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다만, 테러가 다음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최고형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인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1.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72조(폭발성물건과열), 제172조의2(가스·전기 등 방류), 제173조(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85조(일반교	<삭제>

통방해),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제 193조(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제258조제1항(중상해), 제259조제1항(상해치사),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1조제1항(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제284조(특수협박),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및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내지 제369조(특수손괴)의 죄 2.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내지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의 죄 3. 항공법 제156조(항공상 위험발생 등의 죄)의 죄 4. 항공기운항안번법 제11조(항공기운항 저해죄)의 죄 5. 철도법 제80조(신호기 등에 대한 벌칙), 제81조(직무집행방해에 대한 벌칙) 및 제85조(발포하거나 돌 등을 던진자에 대한 벌칙)의 죄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벌칙)의 죄 7. 원자력법 제115조(벌칙)의 죄 8.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호(벌칙)의 죄 9.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벌칙)의죄	
②테러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삭제>
③테러를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제18조(병원체를 이용한 테러)①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병원체를 사용하여 테러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삭제>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삭제>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제19조(테러단체의 구성 등)①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삭제>
②테러단체의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삭제>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삭제>
④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제20조(테러자금의 조달 등)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주선·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그 취득·처분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삭제>
제21조(테러범죄의 미신고)①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알고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테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교통·통신의 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삭제>
제22조(허위신고 등)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협박을 가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허위신고 등)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서신..... ....
제23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삭제>
제24조(형의 면제)테러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 테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게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삭제>
제5장 보칙	
제25조(필요적 수사 및 인도) 외국으로부터 테러범죄로 신병인도를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 수사기관에 인계하거나 신병요구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삭제>
제26조(상금)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제14조 (상금)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제27조(테러피해의 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 인하여 신체 및 재산에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제>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신설>	제1조 (시행일)..... 다만, 제2조제1호 자목 및 제3호,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우리나라가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및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을 비준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 관한 형사사건인 때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제14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0조'로 한다. 3.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중 "48시간"을 각각 "48시간(제5조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7일간)"으로 한다. 4.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테러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4급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규정된 죄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대테러센터의 장"으로 한다. ②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 중 "자금 또는 재산"을 "자금 또는 재산, 테러방지법 제2조제3호 테러자금"으로 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반국가활동"을 "반국가활동 또는 테러"로 한다.

<테러방지법(안)>

정부안 · 정보위 의결안 · 법사위 심사안 대비표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의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 대응체제와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법 목적을 테러 예방·대응, 그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한정 **○ 테러범 수사, 처벌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은 입법 목적에서 제외** **○ 재난관리법 등 현행 실정법으로 대응이 가능한 사후처리 부분을 삭제하여 다른 법률과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 나.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비행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파괴, 비행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 파괴 등**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의안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요인·각계 주요인사·외국요인과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나. 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다. 항공기·선박·차량 등 교통수단의 납치·폭파 라. 폭발물·총기류 그 밖의 무기에 의한 무차별한 인명살상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마. 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살포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다. 외교관등국제적보호인물에대한범죄의방지및처벌에관한협약 라. 인질억류방지에관한국제협약 마.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바. 1971년9월23일몬트리올에서채택된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을보충하는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는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사.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억제협약 아. 대륙붕상에위치한고정된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정서	다.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 납치 등** 외교관등국제적보호인물에대한범죄의방지및처벌에관한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라.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 감금 등 인질억류방지에관한국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마.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 절도, 강탈 등**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제7조에 규정된 행위** 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9월23일몬트리올에서채택된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을보충하는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는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 파괴 등**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제3조에 규정된 행위** 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상에위치한고정된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의안
O 테러개념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테러관련 국제협약에서 테러로 간주하는 행위를 원용하여 정의 O 협약의 내용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 내용을 예시 O 동협약의 위법행위는 이미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 ** 정부안은 주관적 요소를 테러 정의의 구성요건으로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특히 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 농후	자.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자.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장비의 폭파** 등 폭판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2. "테러단체"라 함은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2. "테러단체"라 함은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2. "테러단체"라 함은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테러와 관련하여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지원을 받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의안
3. "테러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테러단체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과 그 자산에 관한 권리 나. 테러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과 테러를 통하여 얻거나 얻기로 한 수익	3.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제공, 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3. (좌동)
4.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국내외에서의 테러의 예방·방지, 테러의 진압, 테러사건현장에서의 인명구조·구급조치 등 주민보호 등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협의자 규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협의자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O 대테러활동의 범주를 축소함 (인명구조, 구급조치 활동 삭제) O 예방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수사활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테러협의자 '규제'를 '관리'로 수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테러의 예방·방지 및 테러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통합방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O 동법안의 적용영역이 테러예방, 대응, 대응체계 구축에 한정되므로 다른 법률과 충돌될 수지가 없음 O 통합방위법은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당연히 모든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굳이 이를 명시할 이유가 없음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의안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4조(국가대테러대책회의) ①대테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국가대테러대책회의) ① (정부안 제4조제1항과 같음)	제3조(국가대테러대책회의) ①**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대테러정책의 수립방향 2. 테러사건데 대한 대응대책 3. 각종 대테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평가 4. 그 밖에 테러의 예방·방지에 관한 정부의 시책	②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4. (원안 제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같음)	②(좌동)
③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u>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u> 2. 국가정보원장 3.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③ .... 1.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정부안 제4조제3항제2호와 같음) 3. (정부안 제4조제3항제3호와 같음) <삭제>	③ .... 1., 2. (정보위 의결안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④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책회의에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의안
⑤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무조정실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책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④대책회의의	④(좌동)
	O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테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O 대책회의는 주로 정책수립기능을 수행하므로 상임위를 운영할 필요성 별무**	
제5조(대테러센터) ①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를 둔다. 1. 테러징후의 탐지 및 경보 2. 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3.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 4.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5. 외국의 정보기관과의 테러관련 정보협력 6. 그 밖에 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제4조(대테러센터) ① ....국가정보원장소속하에 대테러센터를 둔다. 1.·2. (원안 제5조제1호·제2호와 같음) 3. .....기획 및 조정 4.·5. (원안 제5조제4호·제5호와 같음) 6. .....대책회의.....	제4조(대테러센터) ① (좌동) 1.~3. (좌동) 4.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5.~6. (좌동)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의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테러센터의 조직은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④대테러센터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새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당해 파견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②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 직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조직 및 정원은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당해 파견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원안 제5조5항과 같음)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설)** ③ (좌동) ④ (좌동)
제6조(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①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사건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조정·지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②국외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와 외국과의 협력 등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둔다.	제5조 (대테러대책기구의 설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용한다. ②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진입을 위한 특수부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③ 공항, 항만 등 특정지역 내에서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제5조 (테러대책기구의 설치)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지휘·조정하기 위하여 대책본부를 설치·운용한다. ②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진입을 위한 **특공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③ 공항, 항만 등 특정지역 내에서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대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의안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진압작전 및 인명구조조직의 설치) ①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등은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와 테러사건현장에서의 인명구조·구급조치 등 주민보호를 위한 구조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대테러대책협의회) ①지역 및 공항·항만별로 대테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와 공항 및 항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대책기구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특수부대의 운영,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국정원 권한강화 오해 소지가 있는 지역대테러대책협의회(정부안 제8조), 인명구조·구급조치를 위한 구조대(정부안 제7조) 등을 폐지	④ (좌동) ⑤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특공대**의 운영,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의안
제3장 테러의 예방 및 테러에의 대응		
제9조(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안 제9조와 같음)	제6조 (좌동)
제10조(국가중요행사의 대테러대책)①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당해 행사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대테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① (정부안 제10조 제1항과 같음)	제7조(좌동) *용어수정: 대테러대책→테러대책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대테러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u>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② .... <u>...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신설>	<u>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의안
제11조(외국인의 출국조치)대테러센터의 공무원(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과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테러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내체류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테러센터의 장 또는 경찰청장은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장관에게 출국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의 출입국규제 등) ①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그 소재지·국내 체류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규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의 출입국규제 등) ①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그 소재지·국내 체류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수집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규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O 대테러센터 공무원의 외국인 테러 혐의자 대상 정보활동 근거 부여
O 대테러센터는 정보활동만 수행하고 실제 외국인 출입국규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여 관련 외국인에게 침해 구제 절차 보장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의안
제12조(상황전파)①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그 징후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대테러센터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상황전파) ① (좌동) ② .... 대책회의 의장에게.....	제9조①**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그 징후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대테러센터의 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다른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대책회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응조치) 테러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발생지역이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군부대장, 해양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은 현장을 통제·보존하는 후발사태의 발생 등 테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좌동)	제10조(대응조치) **테러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발생지역이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군부대장, 해양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은 현장을 통제·보존하는 후발사태의 발생 등 테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특수부대 및 구조대의 출동요청)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 및 구조대의 출동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특수부대의 출동요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	제11조(특공대의 출동)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특공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특공대를 테러현장에 출동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대책회의 의장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의안
제15조(군병력등의 지원) ①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군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이하 "군병력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12조(군병력 등의 지원) ①대책회의 의장은.....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	제12조(군병력 등의 지원) ① (좌동)
②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따라 군병력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병력등을 지원할 후 국회가 군병력등의 철수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좌동)	②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따라 군병력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병력등을 지원한 후 국회가 군병력등의 철수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군병력등은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방지 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군병력등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③ (좌동)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방지조치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처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의안
제16조(사법경찰권)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 및 군사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삭제> ○ 대테러센터는 테러예방활동만 수행하고 일체의 수사활동 배제	
제4장 벌칙		
제17조(테러) ①테러를 범한 자는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군형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률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다만, 테러가 다음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최고형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인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1.~9. (생략) ②테러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테러를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처벌규정 모두 삭제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의안
제18조(병원체를 이용한 테러)①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병원체를 사용하여 테러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제19조(테러단체의 구성 등)①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3. (생략) ②테러단체의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제20조(테러자금의 조달 등)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주선·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그 취득·처분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삭제>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의안
제21조(테러범죄의 미신고)①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알고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테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교통·통신의 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제22조(허위신고 등)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협박을 가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허위신고 등)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서신.....	제13조(허위신고 등)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삭제>	
제24조(형의 면제)테러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 테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게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삭제>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의안
제5장 보칙		
제25조(필요적 수사 및 인도) 외국으로부터 테러범죄로 신병인도를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 수사기관에 인계하거나 신병요구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삭제>	
제26조(상금)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제14조 (상금)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제14조 (**포상금**)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7조(테러피해의 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 인하여 신체 및 재산에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제>	

정부안	정보위 의결안	법사위 심의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신설>	부칙 제1조 (시행일)..... 다만, 제2조제1호 자목 및 제3호,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우리나라가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및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을 비준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좌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 관한 형사사건인 때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제14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0조'로 한다. ③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중 "48시간"을 각각 "48시간(제5조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7일간)"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대테러센터의 장"으로 한다. ②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 중 "자금 또는 재산"을 "자금 또는 재산, 테러방지법 제2조제3호 테러자금"으로 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반국가활동"을 "반국가활동 또는 테러"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테러방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센터의 장"으로 한다. ②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 중 "자금 또는 재산"을 "자금 또는 재산, 테러방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테러자금"으로 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반국가활동"을 "반국가활동 또는 **테러방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테러"로 한다.